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12.5.18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5월 8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5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5월 18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이영복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창의마일리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3조제2호에서 “공무원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4호에서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구민 및 공무원”을 “국민”으로 용어를 개정함.

- (2) 제6조의2에서는 “구민생활”을 “주민생활”로 용어를 개정함.
- (3) 안 제18조에서는 “「특허법」”을 “「발명진흥법」”으로 개정함.
- (4) 안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창의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연중 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을 위해 별표 3을 둠.
- (5) 안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같은 조제1항에서는 창의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구민과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,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상등급은 구민과 공무원은 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, 부서는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상금 지급기준을 위한 별표 4를 둠.
- (6) 안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누적된 창의마일리지 점수는 이 조례에 따른 창의마일리지 점수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둠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국민제안규정」 및 「공무원제안규정」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또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 제46조(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)를 준용하여 창의마일리지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,

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

마포구 「법제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